

표준근로계약서

(제8조 관련)

서울특별시 성동구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기간제근로자 _____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1. 근로계약기간 : 2015년 3월 일 ~ 2015년 12월 일
(사용부서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)
2.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
 - 근무 장소 : 성동구보건소 검사실
 - 업무 내용 : 접수, 채혈,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
3. 근로 및 휴게시간
 - 근로시간 : 전일근무자 09:00~18:00(8시간), 반일근무자 09:00 ~ 14:00(4시간)
 - 휴게시간 : 12:00~13:00(1시간)
 - *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.
4. 근로 및 휴일
 - 근로일 :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(주5일, 공휴일 제외)
 - * 사용부서 및 기간제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조정 가능
 - 유급휴일 : 1주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1일, 근로자의 날
 - *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유급 주 휴일일 부여하지 않음
5. 휴가
 -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 - *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
6. 임금
 - ① 시간(일, 월) 급: 전일 급 60,000원, 반일 급 30,000원
 - ② 상여금 : 없음(○) 있음()
 - ③ 수 당 : 없음(○) 있음()
 - ④ 지급일 : 매월 말 일(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)
 - ⑤ 지급방법 : 을의 예금통장에 입금 (계좌번호)
7. 기 타
 - 가. “을”은 갑의 정당한 직무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- 나. “을”은 매일 일일 근무상황부에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고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 - 다. “을”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“을”의 귀책사유로 “갑”이나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실,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,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 - 라.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 - 마.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관련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.
 - 바.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,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월 일

(갑) 서울특별시 성동구보건소장 김 경 희 (인)

(을) 주 소 :

주민등록번호 : (휴대전화 :)

성 명 : (서명)